신나는 공동구매 협동조합(가) 장학위원회 운영 내규(초안_10262019)

1장 총칙

1조 명칭 | 본 모임을 신나는 공동구매 협동조합 장학위원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
2 조 지위 | 본회는 하늘뜻교회 산하 위원회다. 향후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발족된 뒤 비영리기구 등록이 완료되면 분리할 수 있다.

3 조 목적 | 본회는 장학기금 조성 및 유지,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.

2 장 본회의 구성과 운영

4조 구성 | 본회는 3인 이상 9인 이내의 장학위원으로 구성되며, 이 가운데 하늘뜻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최소한 1인 이상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5조 임기 | 장학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, 1 회 연임할 수 있다.

6 조 장학후원회 |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학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때 장학위원 및 특별후원자가 회원이 된다.

3 장 장학기금 조성

7 조 장학기금 조성 | 신나는 공동구매 협동조합의 수익금을 기본 기금으로 하고, 여기에 기타 기부금을 더해 조성한다. 조성된 전체 장학금과 집행 장학금에 대한 결과를 당해 년도 이내에 하늘뜻교회에 제출한다.

4장 장학금 지급

8조. 지급 대상 | 미국 내 유학생, 혹은 서류미비이민가정 자녀로 제한한다. 단,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환경일 경우, 추천에 의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.

9 조. 장학금 신청 |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 년 정해진 공고기간 내에 소정의 장학금 신청서를 본인 혹은 추천자가 제출한다.

10 조. 장학생 선발 | 장학위원회의 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 선발한다. 지급 인원과 금액은 해당 년도 장학위원회가 결정한다.

11 조. 장학금 지급 방법 | 일회성으로, 증서와 장학금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지급한다.

5 장 부칙

12 조. 적용 시기 | 위 내규는 2019 년 10 월부터 적용한다. (끝)